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30
----------	------

2017년 3월 2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 11. 16. 김미경 의원 외 11명
- 나. 회부일자 : 2016. 11. 21.
- 다. 상정 일자 :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7년 3월 2일) 상정
 -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7년 3월 2일)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미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와 그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에 소통과 협치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상호 공동의 이익 추구, 동반 발전과 지역사회의 지속적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의회 의장과 단체장 간에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함(안 제3조).
-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의장과 단체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구성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역별 주요 현안 및 예산사업 등에 대한 사전 협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안 제5조).
- 소통과 협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인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와 그 사무의 집행권을 갖는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집행기관”) 간에 원활한 소통·협치를 통한 공동이익 추구하고 동반발전 등을 위해 의회 의장과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단체장”) 회의와 지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음.

2 기본원칙(안 제3조)

- 안 제3조는 의장과 단체장 간 소통과 협치를 통한 공동 이익 도모를 위해 상호 노력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협력, 의장·단체장 회의와 협의체 운영 및 논의 결과의 시정 반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확히 정하고 있음.

제3조(기본원칙) ①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소통과 협치를 촉진하기 위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방안을 도모한다.
② 의장과 단체장은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③ 의장과 단체장은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행정 및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상호 협력한다.
④ 의장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시의원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와 협의체 등을 운영한다.
⑤ 의장과 단체장은 제4항의 회의와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의정활동과 일반행정,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한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구성원인 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소통과 협치의 기반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지속성장 및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그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4항과 제5항 중 단체장으로 하여금 시의원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회의와 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그 논의 결과를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 없이 조례로 단체장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 집행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별첨1:2 참조>).
- 그러나 「의장·단체장 회의」,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와 방법, 논의 안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체장에게 새로

운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볼 수 있고,

- 특히 단체장에게 「의장·단체장 회의」와 「협의체」 논의 결과를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것은 상호 합의를 전제로 논의 결과의 성실한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임.
- 만약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의장·단체장 회의」와 「협의체」는 형식적 회의나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의 근간인 상호 신뢰를 저해시킬 수 있음.

3 의장·단체장 회의(안 제4조)

- 안 제4조는 의장과 단체장은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① 시의회의 의사일정 및 집행기관 주요 행사의 공유, ② 집행기관의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의 사전 설명, ③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균형발전 방안 마련, ④ 지방분권의 확대 및 지방자치의 발전 방안, ⑤ 그 밖에 시의회와 집행기관 상호 간 협력 요청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회의에 참석할 대상과 개최 시기, 회의 개최 방법 및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를 1명씩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조(의장·단체장 회의) ① 의장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의회의 의사일정 및 집행기관 주요 행사의 공유
2. 집행기관의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의 사전 설명
3.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균형발전 방안 마련
4. 지방분권의 확대 및 지방자치의 발전 방안
5. 그 밖에 시의회와 집행기관 상호 간 협력 요청 사항

③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회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과 시의회사무처 소속 관계 공무원
2. 집행기관 : 단체장, 부단체장 및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등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④ 회의는 시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개회 전에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3항의 참석자들에게 안건과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의장과 단체장은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씩을 둔다.

⑥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이는 그동안 매 회기 시작 전 정례적으로 개최해오던 의회 대표단과 집행기관 대표단 간의 간담회를 조례에 명시해 제도화 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 강화와 각종 주요 정책에 대한 상호 협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그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단체장의 「의장·단체장 회의」 개최 의무와 관계공무원의 참석 의무 부과, 집행기관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 사전 설명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단체장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단체장의 집행권한을 사전적·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별첨 1·2 참조>).
- 한편, 제5항은 의장과 단체장은 「의장·단체장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장·단체장 회의」는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의할 사항이 방대하고 간사 간 사전협의와 정보공유 등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각 기관별 간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지역별 협의체(안 제5조)

- 안 제5조는 의장과 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별 주요 현안과 예산사업 등에 대한 사전 협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 협의체에서는 ① 지역별 민원 및 현장 정보 청취, 해결방안 공동 모색, ② 지역별 주요 정책의 사전 설명 및 진행상황 논의, ③ 지역별 주요 예산사업의 사전 설명, ④ 집행기관이 시행하는 지역 행사의 사전 설명, ⑤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요청 사항 등을 협의하며, 참석 대상자 및 회계연도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5조(지역별 협의체) ① 의장과 단체장은 지역별 주요 현안 및 예산사업 등에 대한 사전 협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역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별 민원 및 현장 정보 청취, 해결방안 공동 모색

2. 지역별 주요 정책의 사전 설명 및 진행상황 논의

3. 지역별 주요 예산사업의 사전 설명

4. 집행기관이 시행하는 지역 행사의 사전 설명

5.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요청 사항

③ 지역별 협의체에는 해당 자치구 시의원과 단체장, 안건 관련 집행기관 부서의 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다.

④ 지역별 협의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개최한다.

⑤ 그 밖에 지역별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이는 해당 지역의 대표자인 시의원과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정례화 함으로써 각 지역별 각종 민원,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

지역 행사 등에 대한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 이해와 협의를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그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지역별 협의체」 구성·운영 및 회의 개최, 관계공무원의 참여 의무 부과, 집행기관의 지역별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의 사전설명 및 ‘협의’ 토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단체장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단체장의 집행권한을 사전적·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별첨1·2 참조>), 이에 대한 면밀한 법리검토가 요구됨.
-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지역별 시의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역별 의원 간담회 계획”을 수립하여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별 주요 사업과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5 행정 및 재정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는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단체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조(행정 및 재정 지원) 단체장은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전속적인 권한을 갖는 단체장에게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6 종합 의견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의장·단체장 회의」와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토록 하는 등 서울시의 핵심 정책결정자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는 타당함.
- 다만, 단체장에게 「의장·단체장 회의」와 「지역별 협의체」 구성·운영 및 참여 의무 부과, 집행기관의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 등에 대한 사전 설명 및 협의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의장·단체장 회의 개최와 지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동 회의와 협의체 논의 대상을 일부 조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체계 자구를 수정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장·단체장 회의와 지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4항, 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5조제1항).
- 의장·단체장 회의와 지역별 협의체 논의 대상을 일부 조정함(안 제4조제2항 및 안 제5조제2항).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530 관련
----------	------------

제안년월일 : 2017년 3월 2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의장·단체장 회의 개최와 지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동 회의와 협의체 논의 대상을 일부 조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체계 자구를 수정 보완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의장·단체장 회의와 지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함 (안 제3조제4항, 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5조제1항).
- 의장·단체장 회의와 지역별 협의체 논의 대상을 일부 조정함(안 제4조제2항 및 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의 공동의 이익 추구 및 동반 발전,”을 “지방자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으로 한다.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시의회 의장”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적극 반영한다.”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회의를 개최한다.”를 “의장·단체장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개최하여야 하며”를 “기관 간 상호 협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으며,”로 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지방분권의 확대 및 지방자치 발전
2.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
3. 주요 행사
4. 지역간 균형발전
5. 그 밖에 상호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

안 제5조제1항 중 “대한 사전 협의와 협력 방안을”을 “대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으로, “구성·운영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역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지역별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
2. 지역별 주요 행사
3.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안 제5조제3항 중 “자치구”를 “지역별”로, “참석한다.”를 “참석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의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u>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의 공동의 이익 추구 및 동반 발전</u>, 지역사회의 지속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의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u>지방자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u>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제정안과 같음)</p>
<p>제3조(기본원칙) ① <u>시의회 의장</u>(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소통과 협치를 촉진하기 위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방안을 도모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의장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u>시의원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와 협의체 등을 운영한다.</u></p> <p>⑤ 의장과 단체장은 제4항의 회의와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의정활동과 일반행정, 교육행정에 <u>적극 반영한다.</u></p>	<p>제3조(기본원칙) ① <u>서울특별시의회 의장</u>(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소통과 협치를 촉진하기 위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방안을 도모한다.</p> <p>② ~ ③ (제정안과 같음)</p> <p>④ 의장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u>서울특별시회의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u>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와 협의체 등을 <u>운영할 수 있다.</u></p> <p>⑤ 의장과 단체장은 제4항의 회의와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의정활동과 일반행정, 교육행정에 <u>반영하도록 노력한다.</u></p>
<p>제4조(의장·단체장 회의) ① 의장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u>회의를 개최한다.</u></p> <p>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의회의 의사일정 및 집행기관 주요 행사의 공유 2. 집행기관의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의 사전 설명 3. <u>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균형발전 방안 마련</u> 4. <u>지방분권의 확대 및 지방자치의 발전 방안</u> 5. 그 밖에 시의회와 집행기관 상호 간 협력 요청 사항 <p>③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④ 회의는 시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개최 전에 <u>개최하여야 하며</u>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3항의 참석자들에</p>	<p>제4조(의장·단체장 회의) ① 의장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u>의장·단체장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u>를 개최할 수 있다.</p> <p>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방분권의 확대 및 지방자치 발전</u> 2. <u>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u> 3. <u>주요 행사</u> 4. <u>지역간 균형발전</u> 5. <u>그 밖에 상호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u> <p>③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제정안과 같음)</p> <p>④ 회의는 시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개최 전에 <u>기관 간 상호 협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으며</u>, 회의 개</p>

제정안	수정안
<p>계 안전과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 ⑥ (생략)</p>	<p>최 7일 전까지 제3항의 참석자들에게 안전과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 ⑥ (제정안과 같음)</p>
<p>제5조(지역별 협의체) ① 의장과 단체장은 지역별 주요 현안 및 예산사업 등에 <u>대한 사전 협의와 협력 방안을</u> 논의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u>구성·운영한다.</u></p> <p>② 지역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별 민원 및 현장 정보 청취, 해결방안 공동 모색 2. 지역별 주요 정책의 사전 설명 및 진행상황 논의 3. 지역별 주요 예산사업의 사전 설명 4. 집행기관이 시행하는 지역 행사의 사전 설명 5.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요청 사항 <p>③ 지역별 협의체에는 해당 <u>자치구</u> 시의원과 단체장, 안전 관련 집행기관 부서의 장 및 관계 공무원이 <u>참석한다.</u></p> <p>④ 지역별 협의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개최한다.</p> <p>⑤ 그 밖에 지역별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지역별 협의체) ① 의장과 단체장은 지역별 주요 현안 및 예산사업 등에 <u>대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u> 논의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u>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② 지역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별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 2. 지역별 주요 행사 3.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p>③ 지역별 협의체에는 해당 <u>지역별</u> 시의원과 단체장, 안전 관련 집행기관 부서의 장 및 관계 공무원이 <u>참석할 수 있다.</u></p> <p>(삭제)</p> <p>④ (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의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치”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의정활동과 일반행정, 교육행정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란 시의회의 의결 또는 의사 결정을 집행하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말한다.
3. “단체장”이란 집행기관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소통과 협치를 촉진하기 위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방안을 도모한다.

- ② 의장과 단체장은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 ③ 의장과 단체장은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행정 및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상호 협력한다.
- ④ 의장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와 협의체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의장과 단체장은 제4항의 회의와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의정활동과 일반행정, 교육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의장·단체장 회의) ① 의장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의장·단체장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지방분권의 확대 및 지방자치 발전
 2.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
 3. 주요 행사
 4. 지역간 균형발전

5. 그 밖에 상호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

③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회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과 시의회사무처 소속 관계 공무원

2. 집행기관 : 단체장, 부단체장 및 안전 관련 부서의 장 등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④ 회의는 시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개최 전에 기관 간 상호 협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3항의 참석자들에게 안전과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의장과 단체장은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씩을 둔다.

⑥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역별 협의체) ① 의장과 단체장은 지역별 주요 현안 및 예산사업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지역별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

2. 지역별 주요 행사

3.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③ 지역별 협의체에는 해당 지역별 시의원과 단체장, 안전 관련 집행기관 부서의 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별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행정 및 재정 지원) 단체장은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